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홈페이지(www.dihighvill-parklane2.com)서도 동시 운영되므로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2.08)**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초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ihighvill-parklane2.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사후접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분양권의 전매**

-「주택법」 제6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 공급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 및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제한 및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114타입(일부세대)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전매포함) 시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미납,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3년 12월 18일(월)	2023년 12월 19일(화)	2023년 12월 20일(수)	2023년 12월 27일(수)	2023년 12월 29일(금) ~ 2024년 01월 04일(목) ※01월 01일 신정 제외	2024년 01월 08일(월) ~ 01월 1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17-8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2023.12.08)**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청주시 공동주택과-42516호(2023.12.08.)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89-1번지 일원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A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총 800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면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3-000666	01	084.9974B	84B	84.9974	24.9453	109.9427	53.3889	163.3316	44.3407	196	19	19	35	5	17	95	101	8
		02	084.9996C	84C	84.9996	25.0166	110.0162	53.3902	163.4064	44.3419	196	19	19	35	5	17	95	101	8
		03	084.9961D	84D	84.9961	25.4135	110.4096	53.3880	163.7976	44.3401	58	5	5	10	1	5	26	32	2
		04	114.8332A	114A	114.8332	32.7126	147.5458	72.1294	219.6752	59.9052	250	-	25	-	7	-	32	218	10
		05	114.6274B	114B	114.6274	32.8744	147.5018	72.0001	219.5019	59.7979	100	-	10	-	3	-	13	87	4
	계										800	43	78	80	21	39	261	539	32

•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합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을 하지 아니한다.
• 분양 홈페이지(www.dihighvill-parklane2.com)의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84.9974B	84.9996C	84.9961D	114.8332A	114.6274B
약식표기	84B	84C	84D	114A	11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호	공급 세대 수	층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잔금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30일 이내	24.06.24	24.09.24	24.12.24	25.04.24	25.07.24	25.10.24	입주지정일
84B	201동 2호 202동 2호 203동 2호 204동 2호 202동 2호 203동 2호 204동 2호	196	2층	4	133,266,000	265,734,000	-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3층	4	135,938,000	271,062,000	-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4층	4	138,610,000	276,390,000	-	415,000,000	10,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5~9층	20	141,282,000	281,718,000	-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10~14층	20	143,286,000	285,714,000	-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5~19층	20	144,622,000	288,378,000	-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20~25층	19	146,292,000	291,708,000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6~29층	12	147,628,000	294,372,000	-	442,000,000	10,000,000	3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205동 2호 207동 2호		2층	2	131,262,000	261,738,000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3층	2	133,600,000	266,400,000	-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4층	2	136,272,000	271,728,000	-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5~9층	10	138,944,000	277,056,000	-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10~14층	10	140,948,000	281,052,000	-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15~19층	10	142,284,000	283,716,000	-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20~23층	7	143,954,000	287,04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206동 2호		2층	1	132,598,000	264,402,000	-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3층	1	135,270,000	269,730,000	-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4층	1	137,608,000	274,392,000	-	412,000,000	10,000,000	3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41,200,000	123,600,000
			5~9층	5	140,280,000	279,720,000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10~14층	5	142,284,000	283,716,000	-	426,000,000	10,000,000	3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42,600,000	127,800,000
			15~19층	5	143,954,000	287,04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20~25층	6	145,290,000	289,710,0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26~28층	3	146,626,000	292,374,000	-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08동 2호		2층	1	131,930,000	263,070,00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3층	1	134,602,000	268,398,000	-	403,000,000	10,000,000	3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4층	1	137,274,000	273,726,000	-	411,000,000	10,000,000	3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123,300,000
			5~9층	5	139,612,000	278,388,000	-	418,000,000	10,000,000	3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25,400,000
			10~14층	5	141,950,000	283,050,000	-	425,000,000	10,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15~19층	5	143,286,000	285,714,000	-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20~24층	5	144,622,000	288,378,000	-	433,000,000	10,000,000	3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43,300,000	129,900,000
84C	201동 3호 207동 3호	196	2층	2	131,262,000	261,738,000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3층	2	133,934,000	267,066,000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4층	2	136,272,000	271,728,000	-	408,000,000	10,000,000	3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40,800,000	122,400,000
			5~9층	10	138,944,000	277,056,000	-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10~14층	10	140,948,000	281,052,000	-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15~19층	10	142,618,000	284,382,000	-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20~25층	7	143,954,000	287,04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202동 3호 203동 3호 204동 3호 205동 3호 206동 3호		2층	5	133,600,000	266,400,000	-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3층	5	135,938,000	271,062,000	-	407,000,000	10,000,000	3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22,100,000
			4층	5	138,610,000	276,390,000	-	415,000,000	10,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5~9층	25	141,282,000	281,718,000	-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10~14층	25	143,286,000	285,714,000	-	429,000,000	10,000,000	3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5~19층	25	144,956,000	289,044,000	-	434,000,000	10,000,000	3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43,400,000	130,200,000
			20~25층	25	146,292,000	291,708,000	-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26~29층	15	147,628,000	294,372,000	-	442,000,000	10,000,000	3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132,600,000
	208동 3호		2층	1	132,598,000	264,402,000	-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3층	1	135,270,000	269,730,000	-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121,500,000
			4층	1	137,942,000	275,058,000	-	413,000,000	10,000,000	3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123,900,000
			5~9층	5	140,280,000	279,720,000	-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10~14층	5	142,618,000	284,382,000	-	427,000,000	10,000,000	3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42,700,000	128,100,000
			15~19층	5	143,954,000	287,04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20~24층	5	145,290,000	289,710,0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84D	203동 1호, 4호	58	1층	2	130,260,000	259,740,000	-	390,000,000	10,000,000	2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2층	2	133,934,000	267,066,000	-	401,000,000	10,000,000	3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40,100,000	120,300,000
			3층	2	136,606,000	272,394,000	-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4층	2	139,278,000	277,722,000	-	417,000,000	10,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5~9층	10	141,616,000	282,384,000	-	424,000,000	10,000,000	3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10~14층	10	143,954,000	287,046,0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15~19층	10	145,290,000	289,710,000	-	435,000,000	10,000,000	3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43,500,000	130,500,000
			20~25층	12	146,626,000	292,374,000	-	439,000,000	10,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26~29층	8	148,296,000	295,704,000	-	444,000,000	10,000,000	3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133,200,000
114A	201동 1호 202동 1호,4호 206동 4호	250	1층	4	170,340,000	308,781,820	30,878,180	510,000,000	10,000,000	4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2층	4	175,016,000	317,258,180	31,725,820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3층	4	178,356,000	323,312,730	32,331,270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4층	4	182,030,000	329,972,730	32,997,270	545,000,000	10,000,000	4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54,500,000	163,500,000
			5~9층	20	185,370,000	336,027,270	33,602,730	555,000,000	10,000,000	4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10~14층	20	188,042,000	340,870,910	34,087,090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15~19층	20	190,046,000	344,503,640	34,450,360	569,000,000	10,000,000	4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20~25층	19	191,716,000	347,530,910	34,753,090	574,000,000	10,000,000	4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26~29층	11	193,720,000	351,163,640	35,116,36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206동		1층	2	169,338,000	306,965,450	30,696,550	507,000,000	10,000,000	4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50,700,000	152,100,000

	1호 208동 4호 206동 1호		2층	2	174,014,000	315,441,820	31,544,180	521,000,000	10,000,000	4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52,100,000	156,300,000
			3층	2	177,354,000	321,496,360	32,149,640	531,000,000	10,000,000	4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4층	2	180,694,000	327,550,910	32,755,090	541,000,000	10,000,000	4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54,100,000	162,300,000
			5~9층	10	184,034,000	333,605,450	33,360,550	551,000,000	10,000,000	4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55,100,000	165,300,000
			10~14층	10	187,040,000	339,054,550	33,905,45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15~19층	10	188,710,000	342,081,820	34,208,180	565,000,000	10,000,000	4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20~25층	11	190,714,000	345,714,550	34,571,450	571,000,000	10,000,000	4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71,300,000
			26~28층	3	192,718,000	349,347,270	34,934,730	577,000,000	10,000,000	4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173,100,000
	201동 4호 207동 1호 207동 4호		1층	3	167,334,000	303,332,730	30,333,270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2층	3	172,010,000	311,809,090	31,180,910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3층	3	175,350,000	317,863,640	31,786,360	525,000,000	10,000,000	4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4층	3	179,024,000	324,523,640	32,452,360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5~9층	15	182,364,000	330,578,180	33,057,820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10~14층	15	185,036,000	335,421,820	33,542,180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15~19층	15	187,040,000	339,054,550	33,905,45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0~25층	11	188,710,000	342,081,820	34,208,180	565,000,000	10,000,000	4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208동 1호		1층	1	168,670,000	305,754,550	30,575,450	505,000,000	10,000,000	4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50,500,000	151,500,000
			2층	1	173,346,000	314,230,910	31,423,090	519,000,000	10,000,000	4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3층	1	176,686,000	320,285,450	32,028,550	529,000,000	10,000,000	4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58,700,000
			4층	1	180,026,000	326,340,000	32,634,000	539,000,000	10,000,000	4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53,900,000	161,700,000
			5~9층	5	183,366,000	332,394,550	33,239,450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10~14층	5	186,372,000	337,843,640	33,784,360	558,000,000	10,000,000	4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67,400,000
			15~19층	5	188,042,000	340,870,910	34,087,090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0~24층	5	190,046,000	344,503,640	34,450,360	569,000,000	10,000,000	4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114B	204동 1호,4호 205동 4호	100	1층	3	170,340,000	308,781,820	30,878,180	510,000,000	10,000,000	4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53,000,000
			2층	3	175,016,000	317,258,180	31,725,820	524,000,000	10,000,000	4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52,400,000	157,200,000
			3층	3	178,356,000	323,312,730	32,331,270	534,000,000	10,000,000	4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53,400,000	160,200,000
			4층	3	181,696,000	329,367,270	32,936,730	544,000,000	10,000,000	4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54,400,000	163,200,000
			5~9층	15	185,370,000	336,027,270	33,602,730	555,000,000	10,000,000	4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10~14층	15	188,042,000	340,870,910	34,087,090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15~19층	15	190,046,000	344,503,640	34,450,360	569,000,000	10,000,000	4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56,900,000	170,700,000
			20~25층	13	191,716,000	347,530,910	34,753,090	574,000,000	10,000,000	4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26~29층	8	193,720,000	351,163,640	35,116,36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205동 1호		1층	1	167,334,000	303,332,730	30,333,270	501,000,000	10,000,000	4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50,300,000
			2층	1	172,010,000	311,809,090	31,180,910	515,000,000	10,000,000	4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51,500,000	154,500,000
			3층	1	175,350,000	317,863,640	31,786,360	525,000,000	10,000,000	4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57,500,000
			4층	1	178,690,000	323,918,180	32,391,820	535,000,000	10,000,000	4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60,500,000
			5~9층	5	182,364,000	330,578,180	33,057,820	546,000,000	10,000,000	4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63,800,000
			10~14층	5	185,036,000	335,421,820	33,542,180	554,000,000	10,000,000	4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55,400,000	166,200,000
			15~19층	5	187,040,000	339,054,550	33,905,45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0~22층	3	188,710,000	342,081,820	34,208,180	565,000,000	10,000,000	4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56,500,000	169,500,000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2016.08.12.개정 「주택법」 제57조 의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상가 대지지분을 제외한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입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 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 가능하며, 대출기관 및 진행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 불가시 납부일자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금융기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임.)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을 기준(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의 책임이 아님.)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진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선행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입주예정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B	84C	84D	114A	114B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4	2	-	-	10
	장기복무 제대군인	4	4	2	-	-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4	1	-	-	9
	중소기업 근로자	3	3	-	-	-	6
	북한이탈주민	1	1	-	-	-	2
	장애인	3	3	-	-	-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19	19	5	25	10	78
신혼부부 특별공급 (85㎡이하-주택건설량의 18%범위)		35	35	10	-	-	8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건설량의 3%범위)		5	5	1	7	3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85㎡이하-주택건설량의 9%범위)		17	17	5	-	-	39
합계		95	95	26	32	13	26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소유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유의사항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하여 현장에서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을 부여 합니다.(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 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시 일반공급은 무효 처리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장애인 : 충청북도청 노인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중소기업 근로자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하나원) 교육기획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의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 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8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자녀수 산정 시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청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주택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충청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12. 08	해당 세대의 전년도(2022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2022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자세한 사항 및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td></tr>
</table>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분양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9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또는 충청북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 12. 08	해당 세대의 전년도(2022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2022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형으로 공급하여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2">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청주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할 경우, 해당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금액 기준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청주시 및 충청북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 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 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 거주신청자가** 충청북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2.18(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견본주택 청약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17-8번지
일반공급	1순위	2023.12.19(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12.20(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세대원 등록방법 :「청약자격확인」⇒「세대구성원 등록/조회」및「세대구성원 동의」

・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2">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tr><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table></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table>
<tr><th>구 분</th><th>신청대상자</th><th>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th><th>사전서류제출</th><th>계약체결</th></tr>
<tr><td>특별공급</td><td>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td><td rowspan="3">• 일시 : 2023.12.27(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rowspan="2">• 일시 : 2023.12.29.(금) ~ 2024.01.04.(목)
(10:00~16:00), 6일간 (1월 1일 신정 제외)
※ 당첨유형별 제출서류는 당첨자발표일 이후 분양홈페이지(www.dihighvill-parklane2.com)를 통하여 안내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d rowspan="2">• 일시 : 2024. 01. 08.(월) ~ 01.10.(수)
(10:00~16:00), 3일간</td></tr>
<tr><td rowspan="2">일반공급</td><td>1순위</td></tr>
<tr><td>2순위</td><td colspan="2">• 장소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견본주택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17-8번지)</td></tr>
</table>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에서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 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위탁사 및 시공사 등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입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청약자)</th></tr>
<tr><td colspan="2">이용기간</td><td>2023.12.27. (수) ~ 2024.01.05 (금) (10일간)</td></tr>
<tr><td colspan="2">인터넷</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td></tr>
<tr><td rowspan="2">휴대폰
문자서비스</td><td>대상</td><td>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td></tr>
<tr><td>제공일시</td><td>2023.12.27.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td></tr>
</table>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3.12.29(금) ~ 2024.01.04.(목) (6일간)10:00~16:00까지 ※1월 1일 신정 제외
대상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1,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 장소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견본주택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17-8번지 / ☎ 1533-0038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 체결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세대구성, 주민번호 등 확인을 위해 “전부포함”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조 및 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 내역 발급 또는 청약Home(www.applyhome.co.kr)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 명부로 확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3세대이상 구성 점수를 받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3년이상)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받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표1] 참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숙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4) 참조
노부모분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등재),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19세이상 세대원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한하여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표2) 참조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 비치(상기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제출 필수/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여부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신청자가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또는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3] 참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부동산소유현황 제출 대상자 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표3] 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무주택 소명 등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직인날인)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 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계약서(직인날인) 제출	① ,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② 전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원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② 전년도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작인날인 급여명세표 (간이지급명세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직인날인 된 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프리랜서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신고 미대상자에 한함) /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 ②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자산입증서류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완납증명서 불가시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④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표3]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소유 증빙	① 부동산 소유현황 (전체 세대원별 각각 발급, 주민등록번호 공개) ②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전체 발급)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자산가액 증빙	① 소유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 공동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 ② 소유부동산이 토지인 경우 -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③ 소유부동산이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 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주택 외 건축물 중 집합건물 외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자료, 토지 소유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주택 외 건축물 중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세 과세내역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② 축산업 허가증, 축산업 사업장 토지이용계획 - 초지법에 따른 초지인 경우 ③ 종중소유토지 증빙 또는 현장 사진 및 해당 토지이용계획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②, ③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토지e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결과 (전체 세대원별 각각 조회)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② 시군구청 (또는 위택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추첨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포함)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 대리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여,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는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	본인 및 세대원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
가점제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서류 등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일체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일반공급 청약가점제 신청 시에만 해당)

1.「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 비수도권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 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 12. 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변경전보다 큰 주택형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②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4.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합니다.
6.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8.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인 해약이 가능합니다.
9.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10.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11. 주택법 제65조에 의거하여 주택의 조합권 불법양도, 청약저축 통장의 불법거래 및 주택상환사채 불법 거래등 이를 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증서나 지위를 획득 시에는 최대 10년간 입주자격이 박탈 될 수 있습니다.

Ⅶ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일정	계약 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4.01.08.(월)~2024.01.10.(수) (3일간, 10:00~16:00)	**견본주택**	예비입주자 추후 통보 예정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후 경쟁 미달시에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계좌 이체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사전서류 미접수시 필수서류 구비)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배우자도 대리인에 포함)	○		자격확인 제출서류 일체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포함)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 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 필수 / 대리인 발급분은 접수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용도 : 아파트 분양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계약자 본인 발급 필수 / 대리인 발급분은 접수 불가)
		○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전산 검색결과 주택소유로 판명 시 소명자료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시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7.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대리인 계약 시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118-910026-69104	㈜하나자산신탁

※ 지정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와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추가선택)품목 (천장형시스템에어컨, 가전제품, 현관중문, 가구 등) 납부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제출(견본주택 수납 불가)하도록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상부 납부 계좌로 반드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부적격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단,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8항에 의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 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포함)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된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 므로,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의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관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선정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대납한 대출이자는 입주시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며, 분양계약 해제가 될 경우 이는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로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전일 납입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등이 부담(납부)하며 (단,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단,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대납한 대출이자는 입주시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협약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1차, 2차 계약금을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1차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2차 계약금이 미납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 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84B	20,000,000	2,000,000	18,000,000
84C	20,000,000	2,000,000	18,000,000
84D	20,000,000	2,000,000	18,000,000
114A	26,500,000	2,650,000	23,850,000
114B	26,500,000	2,650,000	23,850,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잔금)	하나은행	118-910026-67904	㈜하나자산신탁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일(잔금)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3)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이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안방'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취득세 등 제세공과금 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자재발주 및 발코니공사 개시 후에는 수분양자의 일방적인 사유로 계약해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고(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거나,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며,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천장 마감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확장일 경우 비확장 세대의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동급 또는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서 시행·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 에어컨 등 각종 설비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 위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MH 건립형 세대도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는 창호 및 각종 가구류(일반가구, 주방가구, 시스템가구 등)는 확장 시 제공 품목 등 구성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상담 등으로 제공 품목 등의 구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후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 변경 등 의 개별 시공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 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도 동일하며 이 경우 비확장 세대의 천장 및 벽체에 추가 단열재를 설치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비난방공간으로서,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샷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한 발코니 공간은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비확장 선택 시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 할 수 있어,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옵션,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전자식스위치, 세대/통신단자함, 온도조절기 등의 각종 설비 사양, 수량, 종류, 규격,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고 외기에 직접노출되는 공간이므로 외부창과 단열재가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안내 (발코니 비확장시 선택 불가)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개소	설치위치	제조사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B	선택1	2	거실+안방	삼성전자	3,490,000	349,000	3,141,000
	선택2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620,000	662,000	5,958,000
84C	선택1	2	거실+안방		3,820,000	382,000	3,438,000
	선택2	3	거실+안방+펜트리2(멀티룸/침실3)		4,810,000	481,000	4,329,000
	선택3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750,000	675,000	6,075,000
	선택4	5	거실+안방+펜트리2(멀티룸/침실3)+침실1+침실2		7,870,000	787,000	7,083,000
84D	선택1	2	거실+안방		3,820,000	382,000	3,438,000
	선택3	3	거실+안방+멀티룸(침실3)		4,810,000	481,000	4,329,000
	선택2	4	거실+안방+침실1+침실2		6,750,000	675,000	6,075,000
	선택4	5	거실+안방+멀티룸(침실3)+침실1+침실2		7,840,000	784,000	7,056,000
114A	선택1	3	거실+안방+주방		5,030,000	503,000	4,527,000
	선택3	4	거실+안방+멀티룸(침실3)+주방		6,310,000	631,000	5,679,000
	선택2	5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650,000	765,000	6,885,000
	선택4	6	거실+안방+멀티룸(침실3)+주방+침실1+침실2		9,310,000	931,000	8,379,000
114B	선택1	3	거실+안방+주방		5,030,000	503,000	4,527,000
	선택3	4	거실+안방+멀티룸+주방		6,310,000	631,000	5,679,000
	선택2	5	거실+안방+주방+침실1+침실2		7,650,000	765,000	6,885,000
	선택4	6	거실+안방+멀티룸+주방+침실1+침실2		9,310,000	931,000	8,379,000

2) 추가 선택 품목 _ 주방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특화	주방특화패키지	84B,84C,84D	상부장(수동형플랩장)+대형아일랜드특화(고급서랍형,전동팝업콘센트)+주방벽(기본형엔지니어드스톤)+터치식주방수전	2,990,000	299,000	2,691,000
		114A,114B	상부장(수동형플랩장)+대형아일랜드특화(고급서랍형,전동팝업콘센트)+주방벽(기본형엔지니어드스톤)+터치식주방수전	3,950,000	395,000	3,555,000
	포켓주방특화패키지	114A,114B	상부장(수동형플랩장)+전면키큰장(인출식5단시스템서랍장)+대형아일랜드특화(아일랜드후드+하이브리드쿡탑+고급서랍형+전동팝업콘센트)+주방벽,상판(상급엔지니어드스톤)+터치식수전	5,890,000	589,000	5,301,000

	히든주방특화패키지	114B	상하부여닫이장+대형아일랜드특화(아일랜드후드_하이브리드쿡탑+고급서랍형+전동팝업콘센트)+주방벽,상판(상급엔지니어드스톤)+터치식수전+고급형폴딩시스템도어	17,400,000	1,740,000	15,660,000
	상급엔지니어드스톤 마감재업그레이드 (주방특화패키지선택시가능)	84B,84C,84D	싱크대상판+아일랜드상판+주방벽(미드웨이)	1,990,000	199,000	1,791,000
	키친핏냉장고장특화1	84B,84C,84D	키친핏3도어냉장고장+인출식5단시스템서랍장+가구판넬(복도)	1,110,000	111,000	999,000
	키친핏냉장고장특화2	114A,114B	키친핏3도어냉장고장+인출식5단시스템서랍장+키큰수납장+가구판넬(복도)	1,860,000	186,000	1,674,000
	키친핏냉장고장특화3	114A,114B	키친핏4도어냉장고장+홈바장+장식장+가구판넬(복도)	3,040,000	304,000	2,736,000
	다용도실특화	84B,84C,84D	직렬형(세탁볼,수전,옷걸이봉포함)	1,250,000	125,000	1,125,000
	(원스톱세탁시스템)	114A,114B	병렬형/직렬형선택(세탁볼,수전,옷걸이봉,수납장포함)	2,350,000	235,000	2,115,000

3) 추가 선택 품목 _ 멀티룸, 욕실 특화 옵션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및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멀티룸 특화	드레스룸패키지	84B	워크인클로젯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벽체신설)	2,360,000	236,000	2,124,000
	드레스룸+주방펜트리패키지	84C	펜트리2드레스룸시스템가구/가구도어+화장대+주방펜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	4,350,000	435,000	3,915,000
	독립형4룸패키지	114A	드레스룸시스템가구+아일랜드서랍장(2개소)+유리장식장+화장대+붙박이장+슬라이딩도어(2개소)	4,760,000	476,000	4,284,000
	마스터존멀티룸패키지	114B	드레스룸시스템가구+아일랜드서랍장(2개소)+화장대+유리장+여닫이도어+슬라이딩도어(2개소)	1,090,000	109,000	981,000
	멀티룸+수납특화패키지	114A	주방펜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벽체신설)+드레스룸1,2시스템가구+아일랜드서랍장(2개소)+화장대+유리장식장+수납장+슬라이딩도어(3개)	7,260,000	726,000	6,534,000
	멀티룸+주방펜트리패키지	114B	주방펜트리시스템가구/가구도어(벽체신설)+드레스룸1,2시스템가구+아일랜드서랍장(2개소)+화장대+유리장+슬라이딩도어(3개소)	3,510,000	351,000	3,159,000
멀티룸 특화 (디자인 건식욕실)	마스터존+건식욕실패키지	84B	드레스룸시스템가구+아일랜드서랍장(2개소)+슬라이딩도어(3개소)+건식욕실(구조변경및디자인UP)+포켓슬라이딩도어	5,820,000	582,000	5,238,000
	독립형4룸+디자인욕실패키지	84C	펜트리2붙박이장+여닫이도어+디자인욕실(구조변경및디자인UP)+여닫이도어이동	3,830,000	383,000	3,447,000
		84D	드레스룸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건식욕실(구조변경및디자인UP)+여닫이도어이동	3,950,000	395,000	3,555,000
	트윈룸+건식욕실패키지	84D	멀티룸여닫이도어+드레스룸시스템가구/슬라이딩도어+건식욕실(구조변경및디자인UP)+포켓슬라이딩도어(2개소)	5,930,000	593,000	5,337,000

4) 추가 선택 품목 _ 디자인 욕실 특화 옵션 (멀티룸 특화 옵션 선택시 선택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및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디자인욕실 특화	마스터디자인욕실패키지	84C	구조변경+디자인UP(카운터형세면대+디자인거울장+수전+악세사리류UP)	1,880,000	188,000	1,692,000
		114A	디자인UP(카운터형세면대+광폭거울+거울장+수전/악세사리UP)	2,420,000	242,000	2,178,000
		114B	구조변경+디자인UP(카운터형세면대+조명센서거울+엔지니어드스톤에이프런(욕조)+악세사리/수전류UP)	3,820,000	382,000	3,438,000

5) 추가 선택 품목 _ 조명특화 패키지 옵션 (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및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조명특화	디자인조명특화 (주방우물천장포함)	84B	현관+거실(복도)+주방+안방+멀티룸+욕실	2,570,000	257,000	2,313,000
		84C	현관+거실(복도)+주방+안방+욕실	2,370,000	237,000	2,133,000
		84D	현관+거실(복도)+주방+안방+욕실	2,370,000	237,000	2,133,000
		114A	현관+거실(복도)+주방(포켓주방,특화주방)+안방+욕실	3,390,000	339,000	3,051,000
		114B	현관+거실(복도)+주방(히든주방,포켓주방,특화주방)+안방+욕실	3,390,000	339,000	3,051,000

6) 추가 선택 품목 _ 가구 및 마감재 옵션(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구및마감재	현관중문	84B,84C,84D,114A,114B	대형디자인슬라이딩도어	1,310,000	131,000	1,179,000
	현관복도장	84B,84C,84D	유상선택형(기본:에어드레서장)	400,000	40,000	360,000
	침실1붙박이장	84B,84C	여닫이붙박이장	1,290,000	129,000	1,161,000
		84D,114A,114B	여닫이붙박이장	1,360,000	136,000	1,224,000
	침실2붙박이장	84B,84C	여닫이붙박이장	1,290,000	129,000	1,161,000
		84D	여닫이붙박이장	1,360,000	136,000	1,224,000
	대형광폭강마루시공 (190mmX1900mm)	84B	각침실+거실+주방+복도대형광폭강마루시공	1,270,000	127,000	1,143,000
		84C	각침실+거실+주방+복도대형광폭강마루시공	1,270,000	127,000	1,143,000
		84D	각침실+거실+주방+복도대형광폭강마루시공	1,320,000	132,000	1,188,000
		114A	각침실+거실+주방+복도대형광폭강마루시공	1,560,000	156,000	1,404,000
		114B	각침실+거실+주방+복도대형광폭강마루시공	1,720,000	172,000	1,548,000
	포세린바닥타일(600mmX600mm)+강마루(115mmX800mm)시공	84B,84C	바닥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침실)시공	2,170,000	217,000	1,953,000
		84D	바닥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침실)시공	2,220,000	222,000	1,998,000
		114A,114B	바닥타일(거실+주방+복도)+강마루(각침실)시공	2,980,000	298,000	2,682,000
	디자인판넬특화	84B,84C,84D	복도+거실벽	1,280,000	128,000	1,152,000
		114A,114B	복도+거실벽	1,650,000	165,000	1,485,000

7) 추가 선택 품목 _ 가전설비 및 가전단품(발코니 확장시 선택 가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기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가전 및 설비	전기쿡탑(인덕션하이브리브리드3구)		84B,84C, 84D, 114A, 114B	파세코PEC-BIH3471S	280,000	28,000	252,000
	에어드레서		84B,84C, 84D, 114A, 114B	삼성전자DF24CB9900ER	1,340,000	134,000	1,206,000
	식기세척기		84B,84C, 84D, 114A, 114B	삼성전자DW60T7065SS	820,000	82,000	738,000
	주방TV		84B,84C, 84D, 114A, 114B	현대에이치티DM-N160	430,000	43,000	387,000
	일체형비데(부부욕실)		84B,84C, 84D, 114A, 114B	대림비앤코DST-8000	1,090,000	109,000	981,000
	천정형복합환풍기(공용+부부욕실)		84B,84C, 84D, 114A, 114B	휴젠뜨3FHD-C150P	1,220,000	122,000	1,098,000
	현관에어샤워시스템(신발장+현관천장)		84B,84C, 84D, 114A, 114B	힘펠HCD-S1500	840,000	84,000	756,000
	빌트인 제습기 (멀티룸 특화 선택시)	(시공위치: 드레스룸)	84B,84C, 114A, 114B	힘펠DHV-5PCCU	910,000	91,000	819,000
		(시공위치: 워크인클로젯)	84D		910,000	91,000	819,000

8) 추가 선택 품목 납무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납부계좌(계약금,잔금)	하나은행	118-910026-68504	㈜하나자산신탁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 납부일(잔금)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에는 공기청정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 매립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에어컨용 콘센트만 기본 제공됩니다.(시스템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는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벽걸이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매립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각 세대 내 실외기설치공간에는 에어컨 용량에 적합한 실외기가 설치되고, 이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고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으며, 해당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

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임의로 스캔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설치공간에는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응축수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및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이에 대해 계약자가 적의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카달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 선정된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고,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위치는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거나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내부 배관 위치, 우물천장・커텐박스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X 마이너스 옵션

■ 공통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수준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현관,<타일>발코니	각실 바닥 콘크리트 노출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발코니, 실외기실),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 :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욕실	타일(바닥,벽), 천정재, 석재(인조강화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주방가구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아일랜드상판,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3구 쿡탑, 렌지후드	설비배관, 렌지후드(자동식소화기 포함)관련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세탁수전, 발코니수전 및 스프레이건, 손빨래수전, 드레스룸, 팬트리, 붙박이장, 시스템선반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환기시스템,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 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실외기실 도어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84B	84C	84D	114A	114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30,300,000	30,200,000	30,200,000	34,400,000	34,400,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마이너스 옵션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부분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신 세대는 기본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나 분양 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마이너스 옵션계약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사업주체에서 시공한 소방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합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명 및 배선기구류의 배관, 배선 위치 등은 발코니 미확장 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스위치, 콘센트, 홈네트워크 기기, 조명기구, 소방기구, 설비기구들은 기본형 제공품목의 전기 배관, 배선만 제공됩니다.
- 기본형 제공 품목의 경우 쿡탑, 오븐, 시스템에어컨의 부하 가산이 제외되므로 인입 간선이 확장형과 상이할 수 있음. 부하 사용 추가에 따른 증설 필요 시 관계법령에 따른 시공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홈네트워크기기 및 배선기구 디자인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생략 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자 개별 발코니 확장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며, 잔금 납부 시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X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속한 대지로서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후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 과정 및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지정기간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견본주택에는 84C형, 114A형, 114B형(거실+주방/다용도실/+안방존)이 설치되어 있고, 미건립 타입(기본형 포함)에 대하여 계약을 하실 경우 카달로그 또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카달로그와 이미지는 실제 건립될 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평면 형태, 가구배치 및 조명, 마감재, 실면적 및 공간분할 등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공급간지를 확인하시고 숙지하여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 견본주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동가 등 동급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목, 옵션 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므로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 품목 등을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이후 계약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서측 혹은 주변에 개발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화되는 여건 및 해당 단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길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칭)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전실 및 홀 등은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에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또는 시행위탁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첨부)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소 변경 내용 미통보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게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등)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상층세대는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 및 시공되므로 기준층 세대 대비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 타일 등의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각종 인쇄물, 조감도 및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 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 동등 또는 이하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일부세대는 마감품질 향상을 위해서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Mock up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합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구조형식은 현장여건에 따라 PC+RC, 데크, 복합공법 등 으로 변경될 수 있고, 각종 건설VE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반여건에 따른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의 지정 및 기초형식의 변경 또는 보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부재 단면 크기 및 철근배근 조정 등의 구조계획 변경 및 보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조변경사항은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및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 변경 될 예정입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대지면적, 건축연면적등은 지적확정측량, 인허가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기타 홍보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XI 단지 여건 사항

■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여건

•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사업과 본 아파트의 준공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준공 또는 입주 이후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외,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은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인허가 변경 등에 의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단지 모형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북쪽에는 충북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동쪽에는 청주개신 동일하이빌 1단지(A2BL)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동쪽에는 국가 보안 시설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남쪽에는 KBS충북지역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방송전파(라디오파 및 마이크로파)가 본 아파트 단지(202동, 204동) 앞을 지나 송출중이며, 사전에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북측 공원 내 지하저류조 설치계획이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 인허가 변경등에 의해 지상 등 저류조 위치, 설치공법, 개소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북측 공원 설치예정구간에 레벨 단차로 인하여 옹벽(높이 15m이하)이 설치 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 상 옹벽의 규모, 디자인, 위치 등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1,2단지 공동주택 주변 도로, 공원, 녹지등기반시설 설치계획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반시설 설치 위치, 규모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북측 경계 인접한 충북대학교 부지 내 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설치계획과 당 사업지와 의료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보도등의 설치계획이 있으며, 추진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의 북측 녹지공간 내 가스공급시설용지(약42㎡)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해당용지내 가스정압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시설물의 지상노출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및 규모는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구간으로 본 사업의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본 사업과는 무관하며,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카달로그, 홈페이지 등)에 표시된 도로, 도로 내 시설(횡단보도, 과속방지턱, 교통표시 등), 기타 공공시설, 개발사업, 주변환경, 교통여건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본 사업의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 대로 1-46호선이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 시 혼잡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단지의 주변에는 공공공지, 연결녹지 등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감대책으로 저소음포장 또는 방음벽 또는 방음림이 설치될 수 있어, 저층부의 시야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 주변에 설치되는 사안들은 향후 인허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쪽에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조성 및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 녹지구간에 일부 옹벽이 발생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 또는 청주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충북대학교의 추가 출입구 개설계획이 본사업지 북동측으로 확정될 경우 아파트 단지 주변의 도로계획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복리시설 내에는「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영유아보육법」제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9조의3, 보건복지부「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차제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사업승인시 권고 사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는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입주예정자의 동의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별도의 의결, 절차 진행 없이 협약상 사업주체의 모든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동 포괄 승계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협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내 "협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 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지원한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반납할 책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및「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협의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정원의 30~70%까지 단지 내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입소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접 유아놀이터 포함)은 보건복지부「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할 지자체(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 포함)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단지 관리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지자체 또는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체)에게 전기,수도,가스 등 단지 간선 시설 사용에 따른 개별 사용료(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고용관리비 제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자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고, 해당 공사 및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개원 시기는 입주개시 이후 다소 지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에 출입할 수 있고,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함께 돌봄센터

• 본 아파트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3항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 의무 설치 단지 입니다. 단,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적접하게 설치하며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설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관련 사전안내 및 수요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현황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어린이집, 조경시설(수공간 등), 주민운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소방용 비상차로,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경보음, 차량소음 등), 빛공해(야간 차량불빛 외), 공회전에 의한 매연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간별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과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태양광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전자파 영향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동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 등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부에 금속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는 경우, 인근 세대에 반사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Ⅶ-0.224g 입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내 시공된 사항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동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관리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사업 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패널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설계되었고, 세대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실외기 설치공간은 외부 발코니 형태로 조성(그릴창 설치 안됨)되며, 실외기 사양에 따라 설치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외기 크기에 따라 설치를 위해 인접 창짝을 해체 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와 향후 청주개신2지구 동일하이빌 1단지 사이에 설치되는 도로구역 내 시설물(보도교)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작물로 청주시 서원구 건설과와 협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할 수도 있으며, 해당 시설물(보도교)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본 아파트와 청주개신2지구 동일하이빌 1단지 입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관계획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주동형태, 입면패턴,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마감재, 장식물, 옥상 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디자인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식재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호수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연결 브릿지, 동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지붕층에는 소방관계법령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뿜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실시공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면마감재 돌출과 줄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5동, 206동 및 207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접 세대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발전기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지하주차장 평면도) 및 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장소인 휴게 공간,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의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주출입구 인접한 201동 208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차량소음, 경보기소음 및 전조등, 경광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 위치한 부출입구 인접한 206동 207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차량소음, 경보기소음 및 전조등, 경광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실별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음. 인접한 세대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가구, 비품,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시설 등의 부대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회의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도서관, 사우나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 부대시설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디피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공용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여건 및 시공 방법 등의 사유로 피난층 및 옥상조형물 공법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동, 203동, 205동 옥상에 "이동통신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설치 위치는 지역전파관리소와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기계실, 저수조실 및 주차장 등 각 실의 층고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옥외안테나(옥상층) : 201동, 203동, 205동

중계장치옥상층 : 201동, 203동, 205동 지하1층 : 203동 PIT, 208동 PIT
- TV중계안테나설비 설치 예정 위치 : 204동옥상층

* 설치 위치는 지역전파관리소와 협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동통신중계장치”의 설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영역으로 시공사의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 태양광패널의 설치예정위치는 201동 1호라인, 202동 4호라인, 203동 1호라인, 204동 1호라인, 205동 1호라인, 206동 1호라인, 207동 1호라인, 208동 4호라인의 옥상층에 설치예정이며, 준공시 설치예정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주차장

• 지하주차장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의 사유로 위치, 면적, 층별 내부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아파트(1201대) 및 근린생활시설(93대) 주차 포함 총 1,294대(경차 및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지하1층~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65기(급속 2기, 완속 5기, 이동형 58기)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동측, 북측) 입니다
• 동측 주출입구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유효높이는 2.7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그외 지하2층 주차장 주행유효높이는 2.3m로, 소형택배차의 진입이 불가합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구획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차이가 날 수 있고,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나,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주차면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지하1층에 별도 상가주차구획이 되어 있으며, 상가 이용차량은 단지 차량 주출입구(동측)을 이용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주 후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세대 정화조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보관소는 근린생활시설 옆에 설치되어 있어 시설 사용에 있어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동, 206동, 207동, 208동에 접한 데크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저층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평면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개폐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 (단, 1층, 2층, 최상층의 세대 천장 높이는 2.5m 시공됩니다. 욕실·발코니·우물천정 제외)
• 세대 내의 실위치와 출입문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가스배관과 후드배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 욕조, 샤워부스, 발코니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영상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치수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 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결로저감을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최하층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을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며,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 상 및 사용 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창호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된 모든 창호와 난간대의 제품사양 및 형태, 크기와 위치, 높이, 재질, 색상, 열림방식 및 방향 난간대 설치 여부 등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및 마감재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 바닥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동등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자재특성상 견본주택과 색상,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유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여닫이 출입문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인접세대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설비배관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 발생 및 변색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철수세미 사용 시 기스 등 제품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공상의 책임은 없으며, 제품 사용 및 관리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욕실 창문과 인접시설의 창문이 인접하여 있을 경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도어는 본 시공 시 동급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대리석과 엔지니어드스톤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변색 방지를 위하여 락스를 비롯한 알카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뒤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배관, 가스밸브, 가스계량기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엔지니어드 스톤(확장옵션품목) 석재류와 상단류, 대형세라믹타일(옵션품목)의 타일나누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현관 디딤석과 주방가구 상판의 석재류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벽체용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올림공간(우물천정)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해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분양건축물에 적용되어 있는 창호는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유리 파손 시 상당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이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형(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 프레임의 구조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높이, 색상, 설치 위치, 디자인 및 고정방법 등)

■ 전기기계 설비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과 욕실팬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실 시공시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안방 및 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매립형)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욕조,샤워부스,변기부스제외)은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보일러 가동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일러 및 보일러 가동을 위한 연도가 노출되어 가구 및 세탁기/건조기 등의 배치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일러는 세대 면적에 따른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세대 개별공사 시 조명기구 및 스위치 등 전기 관련 부품은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치되는 렌지후드 상부장의 경우 배관 등의 설비설치로 인해 수납이 어렵습니다.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과 전시용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유상옵션, 패키지 옵션 선택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패키지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마감재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를 갖춰 두었으며,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설물 및 이동식 가구는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연출용 시공 부분은 전시용품목 및 전시용조명과 연관된 각종 배관, 배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설계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승인(최종변경) 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예 : 타일 등)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의 판단은 KS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 모형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 영상,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상업시설 관련 홍보 동영상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조경, 시설물, 마감재, 및 입면 계획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 침대, 테이블, 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조경 등), 전시조명 등은 견본주택 연출을 위 한 전시품목이므로 본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으로 문틀이 미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 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공사 시 형태 시공·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유상옵션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설비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용검사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는 배관, 배수구, 일반환풍기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단지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확장 발코니 외벽 등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조경은 전시용이며, 본 공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 소화기, 피난구,시각경보장치는 소방법령에 따른 견본주택용이며, 본 공사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서 단위세대용 소방·소화피난설비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타입의 경우 천정높이 2.5m(1층 ,2층, 최상층 한정)으로 되어있으니, 계약세대의 천정 높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층 높이는 2.3m입니다)

Ⅻ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제4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방문기간 및 방법 등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 입주예정일 : 2026년 04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 시행위탁사 또는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 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독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GX,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학교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사항

- 본 아파트 건립 이 후,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개신초등학교 배치 예정이며, 중학교는 청주시 제3중학교군 분산배치 예정입니다. 단,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인근 초등학교로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예정학교의 사정으로 증축이 필요할 경우 학생배치 가능시점이 입주지정기간 이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9의2)

구분	주차장 차로(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 공간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 1층	6.0m	2.7m(소형택배차량 진입 가능)	2.1m	2.7m
지하 2층	6.0m	2.3m(소형택배차량 진입불가할 수 있음)	2.1m	2.7m

▣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의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 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 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당·급수펌프(마목)	적 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 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 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 용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 용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 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 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성능등급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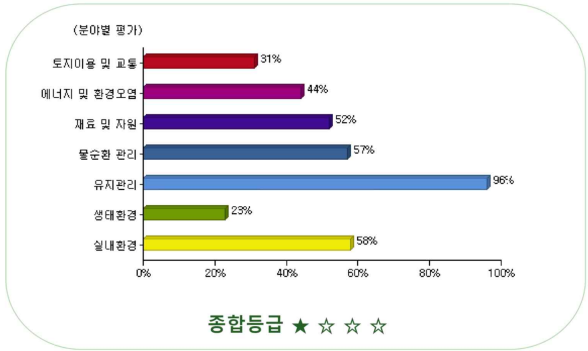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청주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지(A1)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 증 번 호	G-SEED-P-2023-1009-5
건 축 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인 증 기 관	한 국 부 동 산 원
준 공 (예 정) 일	2026.01.24.	유 효 기 간	2023.09.14.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89-1번지 일원		
층 수	지하2층, 지상29층		
연 면 적	161,274.8183㎡ (평가 연면적: 150,410.0185㎡)		
건 축 물 용 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가경건축사사무소		

인증 등급	
인 증 등 급	일반(그린4등급)
인 증 기 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3.03.13.))

위 건축물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종합등급 ★ ☆ ☆ ☆

2023년 09월 14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청주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지(A1)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3.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89-1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3.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4. 연계된 녹지축 조성	-
5. 토공사 절토·성토량(반출기·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6.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7. 에너지 성능	★★
8.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9. 신·재생에너지 이용	-
10.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11. 오존층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감	★
12.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3.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4.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5.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6.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7. 빗물관리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9. 절수형 기기 사용	★★
20.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 환경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및 스마트홈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9월 14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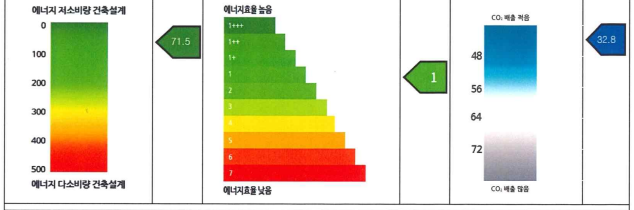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청주 개신2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지(A1)	인증번호	23-주-에-1-0063
준공연도	20260124	평가자	황현수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89-1 일원	인증기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층 수	지하2층 / 지상29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61274.8183(㎡)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가경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5.3	99.7	74.7	20.4
급탕	30.7	42.3	30.9	8.6
조명	5.5	5.2	14.2	2.4
환기		3.1	8.5	1.4
합계	71.5	150.3	128.3	32.8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 년 09 월 05 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내용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3-101-0006800호	이천칠백구억사천구백칠십만원정 ₩270,949,7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차입형(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수탁사 ㈜하나자산신탁 및 시행위탁사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간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사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사인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와 시행수탁사 (주)하나자산신

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사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사인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사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사인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공급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사인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와 시공사 (주)동일토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공급계약상 내용 외 분양계약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6.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 호	㈜원종합엔지니어링	삼성유비스(주)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금 액	₩3,442,774,500	664,845,380	₩598,400,000

▣ 사업주체 현황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공사	시행위탁사
상 호	㈜하나자산신탁	㈜동일토건	㈜동일청주개신피에프브이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 (두정동, 엠프라자 4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2, 9층 (대치동, 홍우빌딩 9층)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0629026	110111-6945864

■ 홈페이지 : www.dihighvill-parklane2.com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서원구 모충동 117-8번지 / 분양문의 1533-003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주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2단지 1533-0038

84㎡~114㎡ 총 800세대
시행 : ㈜하나자산신탁
시공 : ㈜동일토건